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050
----------	------

제안연월일 : 2016. 2. 2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5년 11월 19일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2월 2일에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장의 근무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소방방재청”을 “중앙소방본부”로 함(안 제9조제2항).
- 나.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중앙소방본부”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u>소방방재청</u>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③ (생략)</p> <p><u><신 설></u></p>	<p>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중앙소방본부</u> ----- ----- ----- -----.</p> <p>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u>④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u></p>